



디지털포용법 해설서

2025.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법 해설서

- 기획 및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기획팀
정기호 팀장, 윤미영 수석, 황현주 선임, 유성희 선임
- 감 수**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연구위원
- 집 필** 고려대학교 김법연 교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윤미영 수석
- 발 행 일** 2025년 11월
- 발 행 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온라인 서비스** www.nia.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하는 것을 금하며, 본 보고서의 내용을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
해설서

CONTENTS



Ⅰ	디지털포용법의 개요	04
Ⅱ	제1장 총칙	07
Ⅲ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30
Ⅳ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53
Ⅴ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65
Ⅵ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78
Ⅶ	제6장 보칙	90
Ⅷ	부칙	103



디지털포용법의 개요



I

디지털포용법의 개요



• 디지털포용법의 제안 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심화시대의 필수재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회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현행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이것만으로는 디지털 심화가 일상화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였다.

「디지털포용법」은 ▲ 디지털 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의 규정 ▲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대체수단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노력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도입 ▲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 디지털포용법의 구성

장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대체수단의 제공
	제5조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해소
	제6조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디지털포용정책의 추진체계	제8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9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10조	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11조	실태조사 등
	제12조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13조	전문기관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15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6조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제17조	디지털역량 하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8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9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20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21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22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3조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4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2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6조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제27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
	제28조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제29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30조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지원
	제31조	전문인력 양성
제6장 보칙	제32조	재원의 조달
	제33조	포상
	제34조	국제협력
	제35조	위임 및 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장 총칙





1. 목적(제1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법의 입법목적
-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본 조항은 디지털포용법의 입법목적, 취지, 방향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목적**
지속적으로 빠르게 고도화되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 능력과 활용 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와 예방 등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등의 개발과 확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으로 정보격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포용의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구성원 모두가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혜택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법을 제정하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입법 추진과정에서 법률의 신설보다 현행법 개정에 대한 검토도 있었지만, 디지털포용과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서로 관련성은 있으나 개념의 범위나 깊이 등의 차이가 있어 일부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포용에 관한 사항은 신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 디지털 형평성법(Digital Equity Act, 제정 '21.11 > 시행 '22.5)

- 지역, 인종, 계층과 상관없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평등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통신정보관리청(NTIA) 주도 하에 주정부·단체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법안 주요 내용]

조항	조문 내용
1721.(11)	모든 국민의 정보 및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보장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기술 지원 등 제공하여야 함(디지털포용 정의)
1726.(a)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참여 혹은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차별 받는 것을 금지(차별금지)

• 디지털포용 개념 및 정책방향

-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기술훈련의 제공과 저소득층에 대한 역량 교육(디지털 평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의 온라인 접근성 개선, △지역사회가 필요한 광대역통신망 확장·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통해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영국



• 평등법(Equality Act 2010, '10.4)

- 장애로 인한 웹사이트, 앱, 전자문서 등의 **디지털 접근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개인이 동등한 서비스, 교육, 고용, 건물 등에 접근할 권리인 합리적 조정 원칙**을 강조

[법안 주요 내용]

조항	조문 내용
제1부(Part 1)	사회경제적 차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 규정
제2부(Part 2)	평등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민간 파트너십, 임신과 모성, 인종, 종교(신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규정
제3부, 제5부, 제6부, 제12부 (Part 3, 5, 6, 12)	공공 서비스(Part 3), 근로여건 및 환경(Part 5), 교육(Part 6), 장애인의 교통(Part 12) 등 생활 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규정
제11부(Part 11)	공적영역에서의 평등 의무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등 평등 증진에 대한 규정

• 디지털포용 개념 및 정책방향

- 기존의 차별금지법령(평등임금법, 성차별금지법, 인종관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등)을 통합하여 평등법으로 제정하였으며, 디지털 접근으로 개념을 확장하여 국민에게 디지털 활동으로 인한 혜택이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

프랑스



- 디지털 문맹 퇴치 및 디지털포용에 관한 법안(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illectronisme et pour l'inclusion numérique, '22.7)
 - 전국민의 디지털 기술 향상을 통해 삶의 질 제고 추진 및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정책 제시('25년 현재 법안 심사 中)

[법안 주요 내용]

조항	조문 내용
제1조	디지털 사용자의 역량 평가
제6조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제7조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
제8조	저소득 가구 및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 기금 마련
제13조	디지털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법 개정

• 디지털포용 개념 및 정책방향

- 디지털 포용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도구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

독일



- 접근성 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 '21.7)
 -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기반으로 장애인에게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일 단일법으로 '25년 6월 시행 예정

[법안 주요 내용]

조항	조문 내용
제1조 (목적과 범위)	소비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 생활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 제품,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통신서비스, 제조업체, 유통업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
제3조	접근성에 대한 정의 및 접근성 수준

• 디지털포용 개념 및 정책방향

- 독일은 EU차원의 여러 디지털 전략과 규정 등 국제사회에서 준용하는 포용 개념을 디지털 포용 정책에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각 상위법에 의존하여 추진 중



- 디지털포용성 증진에 관한 법(Zakon o spodbujanju digitalne vključenosti) ('22.11 제정, '25.2 개정)
 - 취약계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바우처 제공 및 디지털 장비 지원에 집중
 - 개요, 원칙, 대상그룹, 로드맵, 홍보, 관리감독, 경과규정 등 총 9장 제31조로 구성
 - ※ 법안명에 '디지털포용'을 담고 있으나, 내용은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등 기본적인 사항에 한정

[법안 주요 내용]

주요 조항	조문 내용
제2조(목적)	기술에 대한 인식 향상과 신뢰를 제고하고,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에 초점
제12조, 제14조 (인센티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조치와 방식 규정, 공교육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학습을 위한 보조금 지급, 디지털 도구 및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개발 기업에 보조금 지급
제18조 (바우처)	컴퓨터 장비 지급 및 디지털 역량 교육 참여에 대한 디지털바우처 지급



-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21.5.)
 - 국민 편의 향상과 **고령화, 정보격차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사업자의 책무, 중점계획 등 제시
 - ※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 정보 활용 기회의 확보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화를 주요 정책 지향점으로 제시

[법안 주요 내용]

조항	조문 내용
제1조(목적)	디지털 사회형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편의 향상,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사회 과제 해결을 도모하여 일본경제의 지속·건전한 발전과 국민 행복 실현에 기여한다.
제2조(정의)	디지털 사회란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수집,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정보활용으로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실현
제8조	지리적 제약, 연령, 신체적 조건, 경제적 상황 등의 요인에 따른 기회 격차 시정
제21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형성
제22조	다양한 주체를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의 확보
제23조	접근성의 확보
제24조	활용능력(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진흥
제25조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 디지털포용 개념 및 정책방향

-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IT기본법」 폐지 후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행정·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참고 2

주요국 디지털포용 정책 현황

• 주요국은 ‘디지털 포용’의 가치와 과제를 국가 디지털 전략에 반영·추진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정책대상을 취약계층에서 ①전 국민으로 확장하는 추세이며, ②디지털 접근성과 역량 강화, ③권리보장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공통 목표로 제시

미국



• 제5차 열린정부 국민행동계획(Fifth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22.12)

- 소외·배제 및 차별없는 포용성을 강조하여 포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 전략 추진

※ 취약계층 포용성 증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경제성, 유용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

• 광대역 이니셔티브('19.,5)

-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보급, 민간 협력 등 추진

유럽



• 디지털 플랫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23.12.)

-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심각해지는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내 중독성 높은 디자인 사용 금지를 포함한 결의안 채택

•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22.12.)

-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EU의 책무와 원칙 제시

※ ①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②연대와 포용, ③선택의 자유, ④디지털 공공 공간 참여, ⑤안전, 보안 및 권한, ⑥지속가능성

프랑스



• 디지털포용 전략(Plan national pour un numérique inclusif in French, '18.5)

-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 차별 배제

스웨덴



• 학교 시스템을 위한 국가 디지털화 전략(National Digitalisation Strategy for the School System 2023–2027, '23.7.)

-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 습득, 기회균등, 접근성 증진 등을 목표로 3가지 중점 분야 포용전략 수립

※ ①모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②동등한 접근 및 사용, ③디지털화 기회 연구

폴란드



• 디지털 역량개발 프로그램(Programem Rozwoju Kompetencji Cyfrowych, '23.2.)

- 디지털 교육 발전 및 사회의 디지털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디지털 역량개발 프로그램 제시

※ ①디지털 교육 발전, ②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역량을 개발 기회 제공, ③직장인 디지털 역량 지원, ④첨단 디지털 역량 개발, ⑤디지털 역량 개발 부문의 활동 관리 및 조정 강화 등 우선순위를 설정

룩셈부르크



• 디지털 포용을 위한 국가 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Digital Inclusion, '21.9)

- 전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 접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접근성 및 역량강화 등을 추진

호주



• 국가 디지털 포용로드맵(A National Digital Inclusion Roadmap, '20,10.) 디지털 포용 방향성을 지능능력, 접근성, 활용역량으로 구분 후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 고령층 대상 디지털 기술향상, 농어촌·다문화 등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교육 등

• 호주 기술 미래('18.12)

- 역량교육 및 농어촌 디지털 인프라 확대, 의료 등 지원

• 데이터 및 디지털정부 전략('23.12)

- 디지털 접근성,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데이터 품질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중국



• 국가 디지털 리터러시 및 기술향상을 위한 핵심가제('24.2.) 디지털로 인한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기술 수준 향상 등을 목표로 6개 분야 17개 핵심과제 제시

※ 전 국민 평생 디지털 학습 시스템 구축, 고품질 디지털 인프라 확산, 장벽 없는 디지털 사회 구축 및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촉진 등 주요 중점 과제 설정

2. 정의(제2조)

• 제정내용

법률 내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 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법률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규정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 용어 정의(제1항)

디지털포용이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은 사회 구성원이 지능정보 기술 및 서비스,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능력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동 개념에 의하여 본 법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명시한다.

디지털취약계층은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경우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을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만 지정하고 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집단에 해당하면서도 지능정보기술 등에 취약한 대상은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취약의 대상 범위를 특정 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하여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등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개념 정의를 시도한다.

지능정보제품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규정한다.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명시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적용(제2항)

법에는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상의 표현이나 용례가 다수 활용되고 있어 동 법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지 않은 개념에 대해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디지털포용 개념과 정보격차에 관한 개념에 대해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가 있다.

제정안의 목적이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고려할 때, ‘디지털포용’의 개념이 종전 취약계층 중심의 정보 활용역량 강화 및 정보 접근성 보장 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정부주도가 아닌 시민사회 및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디지털포용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것으로 디지털포용의 핵심적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¹⁾

그러나, 해당 조문에 대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해소,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의 용어에 비해 ‘디지털포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객관적 표현인지 재고가 필요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정의와 조문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디지털포용법안 검토보고, 2024.8., 10면.

또한, 정보격차에 관한 개념을 디지털포용의 개념 정의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격차는 주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내포하고 있고, 리터러시, 역기능 대응 등을 고려할 때 격차라는 개념 정의가 다소 제한적이므로 별도의 개념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주요국의 디지털포용 정의

유럽



- 디지털포용은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EU)
- 디지털포용이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디지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서비스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전략(ENTELIS)

영국



- 디지털포용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있게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한 접근성, 기술 및 동기부여를 갖는 것(Government of UK)

호주



- 디지털포용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육을 추진하고, 사회의 모든 요소들에 걸쳐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통로로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포용을 의미(Australian Digital Inclusion Index)

뉴질랜드



- 디지털포용은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Digital Inclusion Research Group)

● 지능정보사회에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인 '디지털포용'

- 인공지능기술과 같은 디지털 대전환 기술로 신산업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고도화되는 이면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영역의 차이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해 불평등과 차별 해소, 인적자본 강화, 동반성장, 사회혁신 등의 포용적 성장 등이 포함
- 국내 정부도 디지털을 매개하여 사람중심의 혁신사회로의 전환과 국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Wes&Heath, 2009)
- 주요 국가 및 기관의 디지털포용에 대한 공통적 개념정의는 디지털 격차해소와 역량강화,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제공, 디지털 경제·사회에 참여를 개념적으로 제시, 그 대상을 기존 디지털 격차 개념에에서 주요했던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통한 참여기회와 혁신 혜택이 역량 및 동기부여가 부족한 모든 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특징

참고 2

디지털역량에 관한 개념 검토

개념적 정의

- **(유사성)** 디지털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등은 사용자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동일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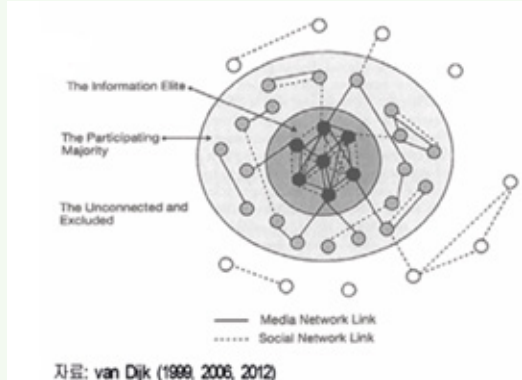
[용어별 정의]

용어	주요 내용
디지털역량	• 국제적으로 대표적 용어로 사용 • 지능정보기술 환경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사용중
미디어 리터러시	• 비판주의 미디어학으로부터 생성된 개념으로, 매스미디어와 같이 강력한 일방향적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
디지털 리터러시	• 디지털 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Gilster(1997)가 '디지털 리터러시'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디지털 시민성	•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다루어 온 시민의 참여능력을 지칭하는 시민주의 능력(civic competence) 개념을 디지털 역량에 결합시킨 개념으로, - 네트워크 기반 사회에서 시민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추는 것으로 개인의 삶과 일, 사회적 관계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 역량과 온라인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

-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용어로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시민성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개념이 동일한 의미이며, 최근 단순히 기술적 역량을 넘어 태도나 관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이라는 표현을 다수 사용

● 네트워크 사회 구조 내에서의 디지털 약자란?

- 네트워크 사회란 사회관계망과 미디어 네트워크가 결합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정의되며, 네트워크 사회에는 잠재적인 세층의 그룹이 있다고 제안



- 세 층의 그룹은 정보 엘리트, 참여하는 대다수, 연결되지 않고 배제되는 사람들로 정의
- 핵심 집단은 '정보 엘리트'로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갖춤
- 그 외 '참여하는 대다수'는 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인터넷을 주로 엔터테인먼트로 활용
- van Dijk(2015)의 개념들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약자'는 그림의 동심원 밖에 위치한 집단
 - * '연결되지 않고 배제된 사람들'이며 전체 인구의 약 1/4을 차지한다고 제안
 - * 배제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낮은 지위를 가지며, 노인, 소수인종, 이주민, 실업자 등을 포함한다고 제안

● 국내의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 구분

-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
 - 법적 정의로 노인인 65세 이상의 사람들로 생애주기에 있어 교육을 받는 시기인 초·중·고·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신기술이 확산·보편화되어 디지털 기술을 성장하면서 배우지 못해 중장년 시기부터 새롭게 배워야하는 코호트(cohort)를 의미
- 이주민
 -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3년 9월 기준 약 131만명으로 30년전과 비교해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
 - 이주민 내의 세부 집단별로 디지털 격차 분석과 각 집단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필요

출처 : 황용석, 제4회 디지털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발표자료, 2024.12.5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 과거에는 지체 장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발달 장애가 증가 추세
- 기 프로그램은 지체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이 향후 중요할 것

- 북한 이탈 주민

- 디지털화가 낮은 사회에서 디지털화가 고도화된 사회로의 이주함에 따라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
-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 외에도 이러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대응 필요

- 저소득층

- 디지털 기기 발전에 따라 기능과 함께 비용도 증가
- 또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른 기기의 격차 증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방향성 명시
- **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구성원 전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제1항)**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 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이를 통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반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제2항)**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노력을 실시하도록 한다.

4. 대체수단의 제공(제4조)

- **제정내용** 국가 및 지자체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대체수단 확보에 대한 책무 명시
- **제정안**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집단 등에 대한 대체수단을 확보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 **해설** 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해당 서비스 및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권리와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념과 의미

- 본 조문은 공공영역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 방식 외에도 전화나 대면 서비스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복지 서비스 외에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에너지, 교통, 수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원칙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 외의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창구의 운영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로만 제공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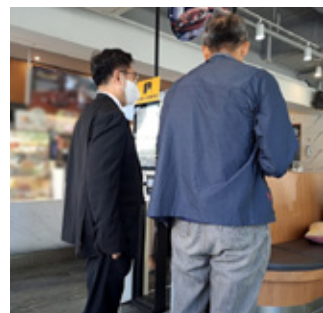
디지털 기술은 공공분야에서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정부24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무인 키오스크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효율적이고 편리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서비스가 디지털 전용으로만 제공된다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을 대체할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설명 ▶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아날로그를 선택할 자유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행정영역에서는 최소한의 디지털 대체수단, 아날로그 방식의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공공·행정서류 제출, 각종 온라인 신청 및 상담 등은 디지털 접근성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22년 전자정부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모두 90%를 넘어섰지만, 고령층(60세~74세)의 90%는 여전히 직접방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장애인... 넘을 수 없는 '디지털의 벽']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 '조작 어려움(53.6%)'을 꼽았으며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에 불과('22),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가 겪는 불편은 더욱 커지고, 비디지털 선택권은 좁아지고 있는 상황



5.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해소(제5조)

- **제정내용** 국가 및 지자체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예방 대응 마련 의무 명시

- **제정안**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윤리적·환경적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활용 확산으로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 해소하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해설** 제5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역기능 예방 및 해소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역기능이란, 기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자동화로 인한 실업의 증가나 기술 독점의 문제(경제적 영역), 개인정보의 침해나 디지털 격차 발생(사회적 영역), 문화의 획일화나 전통문화의 훼손(문화적 영역), 기술의 편향이나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문제(윤리적 영역), 데이터센터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 및 전자폐기물 문제(환경적 영역) 등을 포괄하고 있다.

예방과 해소 부분은 문제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것을 사전에 예상되는 역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때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책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방대응 마련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해소)는 지능정보사회의 기술발전과 인간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기술의 역기능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법적 기반의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6.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제6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사업자의 협력 의무 명시

• 제정안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생산하는 지능정보 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지능정보사업자의 국가 등의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 접근권 보장 등에 대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관련 산업이 구성원들의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제품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권 등을 보장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정한다.

즉,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술로 인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장치로 볼 수 있다.

■ 지능정보사업자의 국가 등의 시책 협력 의무(제1항)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디지털포용 증진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능정보사업자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 및 단체 등을 포함한다.

협력의무란, 지능정보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디지털포용 정책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접근권 보장 노력 명시(제2항)

지능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대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모든 구성원에는 장애인, 노인, 경제적 약자 등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한다.

원활한 접근과 이용을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누가 쉽게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노력의무는 구체적인 강제 조치는 아니나, 지능정보사업자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7.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법」의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 규정(특별법 지위)
- **제정안**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일부 내용을 분리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를 특별법의 지위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와 더불어 「지능정보화 기본법」법과의 충돌,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 **해설**

디지털포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먼저 따르도록 하고,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포용법」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중복 또는 중첩되는 경우 이 법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법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두 법률 사이의 해석 및 집행상 모순이나 저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다.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1.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제8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정안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표준화·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 정책의 국가적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일반사항 및 원칙(제1항)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의미와 수립 주기를 규정한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은 디지털기술과 서비스에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담은 문서를 의미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디지털 환경과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3년을 주기로 계획을 갱신하도록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 「[참고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④ 생략)

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⑦ 생략)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경절차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립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예외로 한다.

■ 기본계획의 내용(제3항)

기본계획 내에 디지털포용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과 실행방안이 포함됨을 규정한다.

[기본계획의 포함 내용]

포함내용	해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디지털 포용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
2. 디지털 역량 함양	국민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및 지원활동을 포함
3.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
4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을 포함
5. 디지털 대체수단 보장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을 포함
6. 기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포용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표준화, 수출 지원 정책의 수립을 포함
7. 법과 제도 개선	디지털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
8. 연구 및 사업 추진	관련 연구와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포함
9. 정책 성과 분석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
10.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포용을 지원할 전문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계획

포함내용	해설
11. 부작용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
12. 국제협력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과 지원방안을 모색
13. 자원 조달 및 운용	정책 시행을 위한 자원 확보와 관리계획을 포함
14. 교육·상담·홍보	디지털포용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
15. 기타 필요 사항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포함

자료제출(제4항)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원만한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세부사항의 규정(제5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 절차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그 대상,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디지털포용 정책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의 기간을 설정함
- 이 기간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동일하게 설정한 것임

별도의 디지털포용위원회의 설립 필요 여부

- 공청회에서 전문성 및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을 위해 별도의 디지털포용 위원회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일명 ‘디지털포용 위원회’는 디지털포용 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임

- 그러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정보통신전략위 산하에 독립적인 디지털포용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기본계획 중 제11호의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해소'의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종합계획에서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역기능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 및 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제9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 제정안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 정책의 국가적 목표와 전략,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무(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연간계획, 각 기관이 디지털 포용정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세부획을 포함한다.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 통보(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지침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고, 이는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장치이다.

■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의 제출 의무(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 전년도 추진실적과 ▲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정책의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지능정보화기본법과의 관계(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는 중복 작업을 방지하여 관계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포용과 지능정보화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점검 및 분석(제5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한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디지털포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규정(제6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다루지 못한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통보대상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 통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며, 디지털포용 증진 정책의 많은 부분이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지침의 통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3. 민간의 정책 참여 등(제10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정책형성 시 다양한 주체의 참여 도모
- **제정안**

제10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사회·경제의 전 영역의 디지털화로 인해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 집행은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자·단체 및 이용자(국민) 등의 의견수렴, 참여를 통해 디지털포용 행정의 민주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이 조문은 정책의 다양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민관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 **민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 수렴(제1항)**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규정

- **(민간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참여)** 디지털포용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을 규정
- **(국민 의견 수렴 방안 마련)** 디지털포용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작용

- **민간의 자발적 활동 지원(제2항)**

민간의 참여 확대와 정책 대상의 의견 반영을 위해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 **(국가기관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규정
-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 디지털포용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술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사회 의미
- **(민간분야의 자발적 활동 및 활성화 지원)** 기업, 비영리단체, 개인 등 디지털 포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재정적 지원, 법적 정치, 제도 개선, 인프라 제공 등)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유사 입법례

- 「과학기술기본법」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민간단체·협의체의 별도 구성 필요 여부

- 민간단체 또는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여, 오히려 이를 규정할 경우 해당 단체 또는 협의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부조직의 신설로 오인할 여지가 있음

4. 실태조사 등(제11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 제정안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대체수단 보장 현황 및 통계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및 통계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6.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7.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수준 및 통계
8.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관련 기업·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이 조문은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이 데이터 기반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과 성과평가를 강조하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실태조사 대상 사항(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현황과 통계를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실태조사의 대상 사항]

포함내용	해설
1.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현황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디지털 소외 계층)의 실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조사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수준 및 통계	국민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디지털 리터러시)을 파악
3. 디지털 대체수단 보장 현황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대체수단의 이행상태를 조사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기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개인적 문제(ex.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하여 조사
5. 접근성 보장 현황	디지털 접근성을 노핑기 위한 조치의 이행 정도를 분석
6. 디지털 포용 정책의 성과	정책의 실행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준가 방향을 점검
7.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수준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의 상태를 조사
8. 기타 필요한 사항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자료제출(제2항)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정책이 통계에 기반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제3항)

실태조사의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회 보고의무(제4항)

정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국회가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할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참고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 (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데이터의 활용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 세부규정(제5항)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간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사 및 결과의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사 입법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 (연차보고 등)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실태조사와의 차이점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나 그 목적에 있어 상이함이 있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경우 정보격차 실태조사,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웹접근성 실태조사 등 ‘활용’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디지털포용법」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실태조사,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 등 활용 이전의 ‘접근’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의 내용이 주를 이룸
-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한정적이며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 바, 「디지털포용법」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각 부처, 지자체, 민관의 디지털 역량, 접근성 등 디지털의 포용적 활용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민간자료의 수집을 위한 사항

- 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 뿐만 아니라 민간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를 두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의무가 발생하여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공개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
- 디지털포용 정책은 현재 진행형인 기술의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 정보나 민간의 이행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바, 민간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있으며, 자료제출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주관기관/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조사개요 :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7조 (연차보고),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실태조사)
- 조사항목

구분	영역	세부항목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인터넷 상시접속 가능 여부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	PC 이용능력,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디지털정보화 활용수준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정보 이용 태도 및 기타	디지털 조력자 및 사회적 자본	디지털 조력자, 온라인 사회적 자본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이용 효능감, 일상생활 부문별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인공지능기술 관련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경험 인공지능 서비스별 인지도, 사용 경험, 도움 정도, 인공지능 비이용 이유, 향후 이용하고 싶은 인공지능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

● 웹 접근성 실태조사

- 주관기관/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조사개요 :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를 파악, 계량적으로 측정·평가·분석하여 관련 정책 방향 도출에 필요한 근거 자료 확보
- 법적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 조사내용 : 웹접근성 국가표준의 24개 항목* 준수 조사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자동재생 금지, 콘텐츠 간의 구분, 키보드 사용 보장, 초점 이동, 조작 가능, 응답 시간 조절, 정지 기능 제공,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반복 여역 건너뛰기, 제목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기본 언어 표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콘텐츠의 선행 구조, 표의 구성, 레이블 제공, 오류 정정, 마크업 오류 방지,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5.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12조)

• 제정내용

영향평가

• 제정안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제12조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도입, 개발, 구축, 시행에 앞서 디지털포용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디지털포용을 중요시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도입될 때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불평등을 예방하고 균등한 정보 접근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개요]

- (자체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 제품·서비스 신규 도입·개발·구축 또는 디지털 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 실시
- (개별 영향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제품·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원칙(제1항)

국가기관 등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 도입, 개발, 구축, 또는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전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디지털포용을 고려한 영향평가를 사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 도입이 디지털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며, 디지털포용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디지털포용영향평가의 실시(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디지털포용과 관련 있는 국가기관 사업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디지털포용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앙 및 지방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포용적인 디지털 전략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간 균형적인 디지털포용을 실현하고자 한다.

■ 고려사항(제3항)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①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②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③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것을 규정한다.

디지털서비스 및 제품의 영향 평가 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그들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가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 개선 권고(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한 개선이 있을 경우 권고를 통해 적시에 수정을 유도하여 디지털포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며, 각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디지털포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이다.

■ 이행의 노력(제5항)

권고 사항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지 않고,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 영향분석 등(제6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이 디지털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 기타(제7항)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 방법, 절차, 권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평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각 기관들이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유사 입법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기술영향평가)

6. 전문기관(제13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 제정안

제13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 디지털포용 관련 법·제도 연구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분석·평가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 교육
8.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의 지원
9.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 지원
10. 제21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운영 지원
11.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운영 지원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전문기관의 지정(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호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다.

— (지정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대상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관련 기술적 전문성과 실행 능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 및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 전문기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기술 지원 ▲ 국내외 동향 조사·분석 ▲ 법·제도 연구 ▲ 정책 및 사업 평가 ▲ 국제협력 ▲ 디지털 역량교육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지원 ▲ 디지털역량센터 운영 ▲ 접근성 품질인증 지원 ▲ 우선구매 제품 검증 ▲ 그 외 위탁 사업 수행

■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비용지원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지원범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이 가능하도록 규정

이 조항을 통하여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유사 입법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 현재도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를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시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취지가 있음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1. 목적(제1조)

- **제정내용** 국가 및 지자체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 시행
- **제정안**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조사·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 입법취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효용을 최대한 누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포용 기술 등을 적용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보다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바, 이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사업의 시행(제1항)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구성원의 역량 격차를 주리고, 기술활용 능력을 노핑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 **(교육 시설 및 장비 설치)** 디지털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반 환경 조성 목적으로 필요한 교육 시설과 장비 설치
-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해당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정책 및 사업 추진
- **(지표 개발 및 연구)** 디지털 역량 교육의 지속성과 기술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정책 및 사업 등이 환경 변화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함양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보급
- **(홍보 및 포상)** 정책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포상 및 홍보 사업 실시
- **(디지털 문제 해결 지원)**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노력 규정(제2항)

사업 시행시에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업과 정책의 혜택을 받는 등 정책의 효과가 균등하게 미칠 수 있도록 차별없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 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정책 설계와 실행 시 포용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보장하는 취지이다.

■ 비용의 부담(제3항)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과 목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을 하여 많은 구성원이 이러한 활동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 디지털역량 교육의 요소(제4항)

디지털 역량 교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갖추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역량 요소는 ①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② 정보기술 이용과정에서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③ 프라이버시 침해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④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있다.

■ (관련 부칙)

해당 조문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는 교육의 시책 마련과 시행에 관한 규정만 두는 것으로 개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내용)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는 는 디지털역량교육이 포함할 요소의 하나로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규정하고 있음
-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관해서는 이 법이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정의 조항이 없고, 다른 조항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디지털 과의존’,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 예시사항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2. 디지털 역량센터의 지정

• 제정내용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 제정안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 등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반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내 디지털 역량 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과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디지털교육 및 지원을 위해 협력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재정 지원(제2항)

지정된 디지털역량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제3항)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역량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며,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별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 센터의 운영 및 관리(제4항)

디지털역량센터와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운영·관리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센터의 공정한 지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보자이고, 필요 시 부적격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유사 입법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3. 디지털 역량교육 표준교재

- **제정내용** 디지털 역량 교육 표준교재의 개발 및 보급
- **제정안** **제16조(디지털역량교육 표준교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 역량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교육의 목표와 효과를 취지에 맞게 달성할 수 있도록 표준교재 또는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 표준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보급할 수 있다.
 - **지원(제2항)**
민간에서 개발되는 교육 교재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기타(제3항)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한다.

4.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정내용** 디지털 역량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제정안** **제17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역량 관련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성과 공유,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리,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 등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시스템의 구축·운영(제1항)**
디지털역량함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로 해당 규정을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2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5.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 **제정내용**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국가의 지원
- **제정안**

제18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창업진로상담
 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취업 및 직무 교육 실시(제1항)**
국가 및 지자체는 디지털 역량 함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14조 제1항에서 언급된 디지털역량 함양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량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교육 시 제공사항(제2항)**

교육 참여자에게 취업·창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지능정보기술 기반 취업·창업 정보 제공)** 디지털 기술이 요구되는 일자리나 직무, 창업 관련 정보 제공
- **(심리·진로상담)**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진로선택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및 취업·창업 진로 상담을 병행, 이를 통해 디지털취약 계층의 자신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력설계 지원
- **(직업훈련 및 지원프로그램)** 디지털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취업·창업 기회 제공

■ **민간기업의 참여활성화(제3항)**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고용 등이 요구되므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1.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제정내용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제정안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지능 정보사업자는 지능 정보서비스 및 지능 정보제품을 설계·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의 이용 시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한다.

■ 원칙(제1항)

국가기관 등에 접근성 보장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열거하고 있다.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규정	설명
웹사이트	특정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 모바일 웹을 포함(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2조)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이동통신단말장치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의미(전파법 제2조)
전자출판물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출판법 제2조)
그 밖의 지능정보 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대통령령으로 규정

■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제2항)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설계·제작·제공에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법 제6조)

■ 시책의 추진(제3항)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 **(정의)**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의2)
- **(종류)**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가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 **(세부 품목 분류체계)**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 유사 입법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시행일 2025. 3. 27.)

-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그 대상을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이외의 주체를 명확한 반면,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대상을 「지능정보화 기본법」보다 폭넓게 규정
-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는 삭제 예정(「디지털포용법」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전자서명서비스의 추가 여부

- 전자서명은 활용목적에 따라 웹 접근성 또는 모바일 접근성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전자서명법」상 접근성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할 필요 없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종류의 규정 수준

- 대상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과 고시 중 어떠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논의가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능정보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경우 등의 용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되었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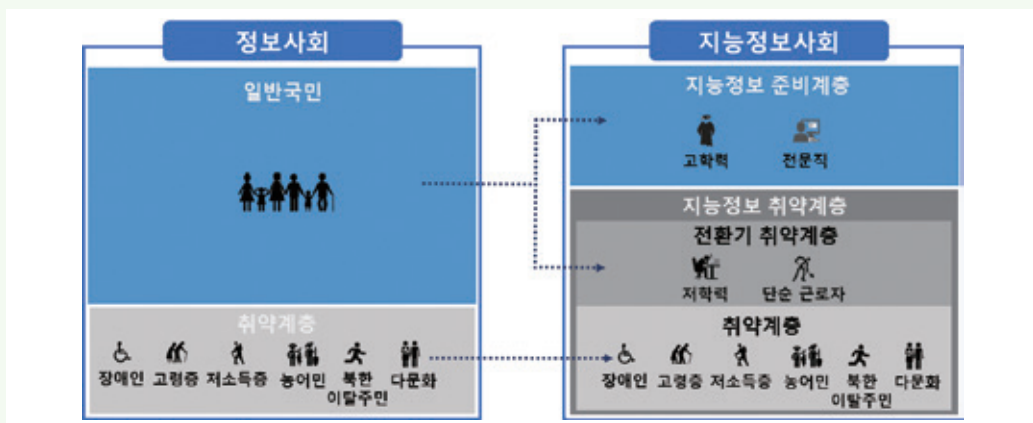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

-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생활편의 증진 등 인류사회의 진보가 예견되나, 승자독식 등 부정적 영향으로 소득불균형을 가속화하여 양극화와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사회적 갈등 심화
-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격차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소득과 삶의 질 저하, 사회참여 기회 축소 및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짐
- 디지털역량 격차의 심화는 빈부 격차를 넘어 삶의 불편 및 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능정보화에서 소외되는 디지털취약계층 대상의 정보격차해소 마련을 위한 적극적 정책추진이 필요
- (인증유효기간) 1년
- (심사기준) 국가표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지침 2.1

-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 증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국민 중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 적용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생 예상*

* '23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4대 정보취약 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77% 수준으로 나타남(NIA, 2024)

-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PC · 인터넷 격차는 스마트(모바일) 격차로 지속되고 있으며, 지능정보사회로 전환과정에서도 유사 상황이 발생
-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지능정보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新정보격차 발생 전망



2.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 제정내용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증진 조치 의무 부과

• 제정안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제조·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방법,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최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기기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접근·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조치이행을 위한 행정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이용편의를 위한 설치·운영자의 조치(제1항)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① 보조인력의 배치 또는 ②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무인정보단말기]

- 키오스크(Kiosk)라고도 하며, 본래는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단어임
- 정보통신에서는 정보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를 말한다. 공공시설, 대형서점, 백화점이나 전시장, 또는 공항이나 철도역 같은 곳에 설치되어 각종 행정절차나 상품정보, 시설물의 이용방법, 인근지역에 대한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기를 의미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무인정보단말기의 유형]

유형(대분류)	설명	중분류
유통(결제형)	상품코드(바코드 등)를 사용자가 직접 스캔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유형(ex. 대형마트, 편의점 등)	· 무인주유기 · 무인주차정산기 · 무인결제기 · 무인도서대여반납기
주문(티켓형)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음식물 등의 주문 및 구매(ex.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 무인주문기

유형(대분류)	설명	중분류
발권(티켓, 서류)	요청에 대해 정보처리 후 인쇄물 제공 (ex.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처방전발행기, 셀프체크인)	·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발권기 · 무인발매기 · 무인증명발매기 · 셀프체크인 · 무인처방전발매기 · 금융자동화기기
안내	사용자 조작에 따라 정보 제공 (ex. 관광정보시스템, 정보제공시스템, 안내시스템 등)	· 종합정보시스템 · 위치정보시스템
기타		· 무인 사용자인증기 · 기타(사물함, 택배함 등)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 kiosui.or.kr〉

■ 이용편의를 위한 제조·임대자의 조치(제2항)

디지털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며 정당한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 시정명령(제3항)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 및 제조·임대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보고·자료제출·현장조사(제4항)

시정명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제조·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① 보고, ②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③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제5항)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사 입법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의2 (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정보 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시행일 2025. 3. 27.)

-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를 수범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을 수범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존재하나 그 취지는 동일함
-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의2는 삭제 (「디지털포용법」부칙 제6조(다른법률의 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3조 (시정명령) 등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타법과의 관계 등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
- 다만 비슷한 취지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 제2항의 입법 당시의 의견에 따르면, ‘설치·운영자의 단계적 적용 범위’를 위임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므로 과태료 부과·징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 제정내용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접근성 품질인증의 실시

• 제정안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나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접근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 접근성 품질인증(제1항)

디지털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기술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이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 인증기관(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담당할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 즉 인증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주체를 마련하며,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기관의 자격을 검토하고 품질 유지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자료제출 등(제3항·제4항)

자격이 있는 기관만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인증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실적과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 취소와 정지(제5항)

인증기관의 책임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 기타(제6항)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유사 입법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

- ▣ 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 ▣ 시행령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품질인증제도의 타당성

- 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① 법 제정 취지에 부적합하고, ② 지능정보제품의 혁신 저해에 우려가 되며, ③ 지나치게 넓은 품질인증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④ 타인증제도와 중복이 된다는 견해가 존재
- 그러나 지능정보 제품, 지능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없이' 접근·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임
- 다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자율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하여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인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음

● 정보접근성(웹접근성, Web Accessibility)

- **(개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약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한 웹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
- **(인증대상)**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 **(인증유효기간)** 1년
- **(심사기준)** 국가표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지침 2.1

● 모바일 앱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 MA)

- **(개요)** 국가표준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와 장애유형별 사용자가 주어진 과업의 수행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사용자 심사를 수행, 두 심사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인증 마크 부여
- **(인증대상)** 마켓(Play Store, App Store)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 **(인증 유효기간)** 1년
- **(심사기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표준번호 KS X 3253)

● 소프트웨어 접근성(Software Accessibility, SA)

- **(개요)** 국가표준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와 장애유형별 사용자가 주어진 과업의 수행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사용자 심사를 수행, 두 심사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인증 마크 부여
- **(인증대상)**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 **(인증 유효기간)** 1년
- **(심사기준)**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이용환경에 맞춰 심사지표 적용

〈출처 :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kwacc.or.kr〉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1.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사업 추진

• 제정안

제26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① 정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 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 실시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 사업추진(제1항)

정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 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표준의 제·개정과 폐지 및 보급, 국내외 표준의 조사와 연구개발 등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국제표준기구와의 협력 유지 의무(제2항)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포용기술과 서비스는 국제적 표준과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 표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의무화한다.

■ 기타(제3항)

사업의 추진과, 국제 표준기구 또는 국제 표준기관과의 협력체계의 유지·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 유사 입법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

• 제정내용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 및 고시

• 제정안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하고 유망한 기술 및 서비스를 지정하고 우선 활용을 하도록 한다.

■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 및 고시(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한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화 지원(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로 지정된 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활용 권고(제3항)**

국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 **기타(제4항)**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기준, 방법, 절차 및 사업화 지원,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3. 디지털포용 기술 연구·개발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기술 연구의 개발 사업 추진

• 제정안

제28조(디지털포용 관련 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① 정부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동향, 수준 조사·분석
2.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평가 및 활용
3.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정보의 원활한 유통
4.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5.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활용에 있어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연구개발 사업 추진(제1항)

정부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기술·서비스 동향 조사 및 분석)** 국내외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의 수준과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과 연구개발에 반영
- **(기술·서비스 평가 및 활용)** 디지털포용 기술과 서비스의 적합성, 효율성, 활용 간으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방안 모색
- **(정보 유통 지원)**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서비스 정보를 원활히 유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테스트베드 및 시범사업)** 실증환경(테스트베드)을 조성하여 기술 및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확대
-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촉진)** 기술·서비스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민간 기업, 시민사회,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디지털포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모델 개발
- **(기타 필요한 사업)** 이 외에도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 개발·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추가 사업 포함 가능

■ 연구개발 사업의 위탁(제2항)

연구개발 사업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때 위탁대상기관은 제13조에서 지정된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포함한다.

■ 비용 지원(제3항)

연구개발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사업수행을 위해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조성, 시범사업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기타(제4항)**

위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기관의 선정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4.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제정안**

제29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관련 연구 개발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제1항)**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용의 지원 등(제2항)**
다양한 주체에 의한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기술 및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5.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지원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출 지원

• 제정안

제30조(디지털포용 기술 · 서비스의 수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 · 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 · 서비스의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 · 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 · 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 · 지도 · 대외홍보 · 전시 · 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디지털포용기술 · 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 · 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디지털포용기술 · 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자
4. 디지털포용기술 · 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의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촉진과 수출 진흥을 지원하는 등의 산업 지원 조치 등이 필요하다.

■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재정적 지원 등(제2항)

투자촉진, 수출진흥 등에 관한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물적, 인적지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수출을 추진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하려는 자,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 등의 업을 영위하는 자, 수출 목적의 국제협력 추진하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6. 전문인력 양성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제정안**

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고용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개발, 제공, 활용하는 전문인력이 다양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등의 노력 의무(제1항)**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확보, 양성, 자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한 조항이다.
 - **행정적·기술적·관리적 지원(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전문인력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되, 행정적·기술적·관리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6장 보칙





1. 재원의 조달(제32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자원조달의 방법
- **제정안**

제32조 (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제31조는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여 법적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재원의 확보(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시책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인 자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재정 지원이 부족할 경우 시책이 중단되거나 불완전하게 실행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구체적 지원방안의 명시(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시책과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재정적 뒷받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책임 분담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 활용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유사 입법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4조 (재원의 조달)

2. 포상 (제33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포상
- **제정안**
 - 제33조 (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상을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포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해 기여한 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하고(공로의 인정), 포상을 통해 디지털포용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디지털포용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사회적 참여 독려) 하는 것이다. 또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유사한 활동을 다른 기관, 단체, 개인 등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우수사례 확산) 한다.
 - **포상의 대상(제1항)**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포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제2항)**

포상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포상기준과 조건 등을 위한 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유사 입법례

「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포상제도의 구체화

법은 포상의 지급 대상, 절차 및 범위 등을 다소 포괄적으로 하위 규정에 이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도의 자의적 운영 방지 등의 측면에서 지급대상 미 지급한도 등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3. 국제협력 (제34조)

- **제정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에 관한 정부의 업무
- **제정안**

제34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제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근거는 물론, 디지털포용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와의 협력을 통하여 디지털포용을 이루고자 한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국의 디지털포용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논의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해 외국 및 국제기구와 정보교환, 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또한, 디지털포용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므로, 국제적인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외 포용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특히 국제기구, 외국 정부와 협력하여 디지털포용의 글로벌 모범 사례를 학습하고 활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디지털포용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제기준 수립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지원(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관련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국제기준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국제협력 추진에 관한 구체적 업무(제3항)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열거하며, 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②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③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④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과 ⑤ 그 밖에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기술과 인력의 교류, 공동 연구개발, 민간 협력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국제협력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글로벌 포용정책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인 협력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사 입법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5조 (국제협력)

「과학기술기본법」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nversation)의 채택

- 2024년 9월 22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미래정상회의' 총회를 열고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의 해결방안을 담은 「미래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의 부속문서로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일환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채택함
 - 협약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미래에 대한 목표, 원칙, 공약 및 조치를 제시
 - 협약의 목표는 ① 모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GDs) 전반의 진전을 가속화, ② 모두를 위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포용과 혜택을 확대, ③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증진하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 ④ 책임감 있고 공평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발전, ⑤ 인류를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임
 -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경제 포용성 확대,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음
 - 협약은 국제 및 지역 기구, 민간, 학계, 기술 커뮤니티, 시민사회 단체가 협약을 지지하고 이행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공, 민간 및 다자 자원의 자원 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할 필요성이 강조
 -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각 국가에게 2030년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적 조치 및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참조 : <<https://www.un.org/en/summit-of-the-future/pact-for-the-future>>,
<<https://www.un.org/en/summit-of-the-future/global-digital-compact>>

4. 위임 및 위탁 (제35조)

- **제정내용**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제정안**

제3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업무의 성격상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서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포용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디지털포용에 대한 수요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위임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위탁(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디지털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였다.

• 유사 입법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관리·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제4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 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5.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

- **제정내용**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 **제정안**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법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특정한 공무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담아,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무도 공공 업무로 간주하여 그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고자 한다.
 - **해설**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제3자 뇌물제공, 알선 수뢰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6. 과태료 (제37조)

• 제정내용

과태료

• 제정안

제37조(과태료) ①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조문 필요성과 내용 해설

■ 입법취지

「디지털포용법」의 경우 비교적 중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벌 대신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상 시정명령의 불이행과 인허가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제공하고, 제도의 준수를 촉진하여 디지털 접근성 품질인증과 관련한 올바른 행정과 공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의 불이행(제1항)

「디지털포용법」제20조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한편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법 제21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상한(제2항)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
- ③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 방법(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인증업무의 범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